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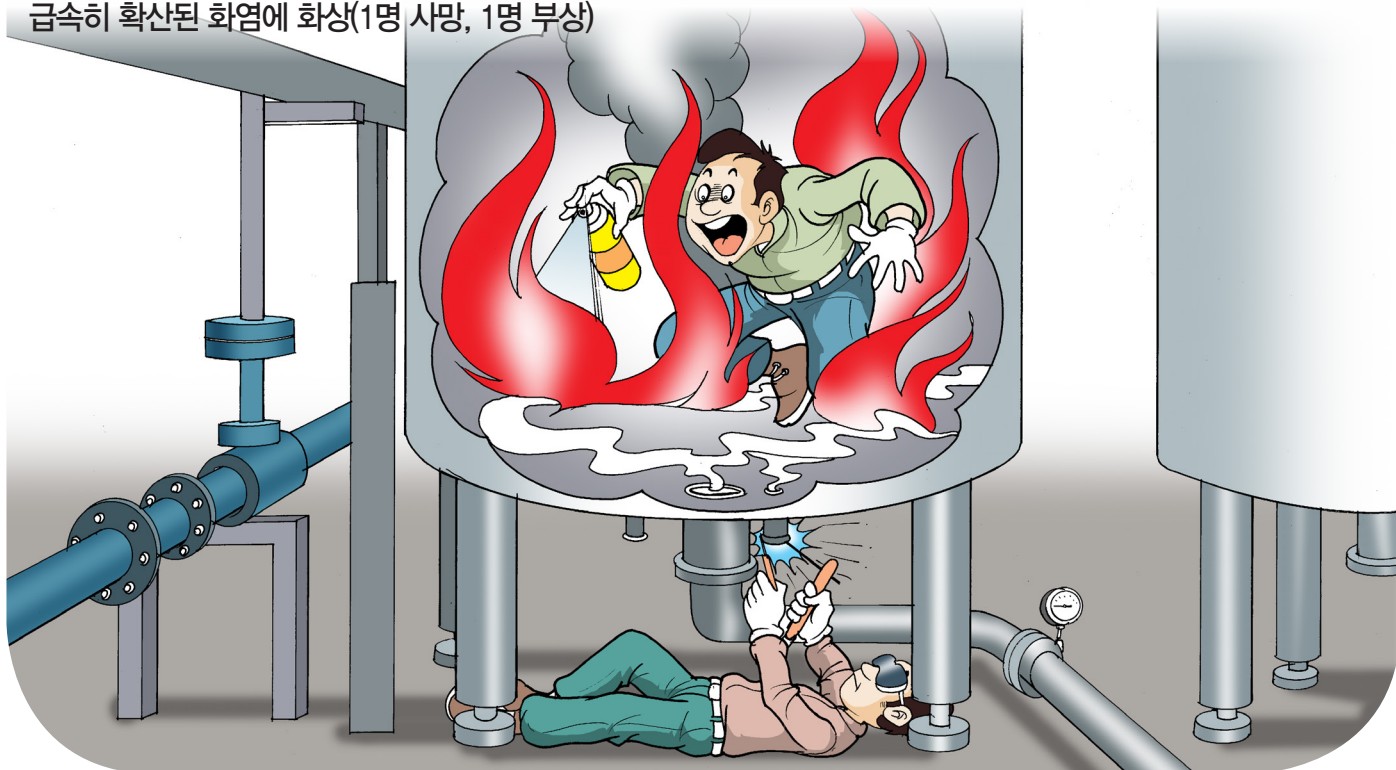
재해사례

(화염)

저장탱크 용접작업 중 화재에 의한 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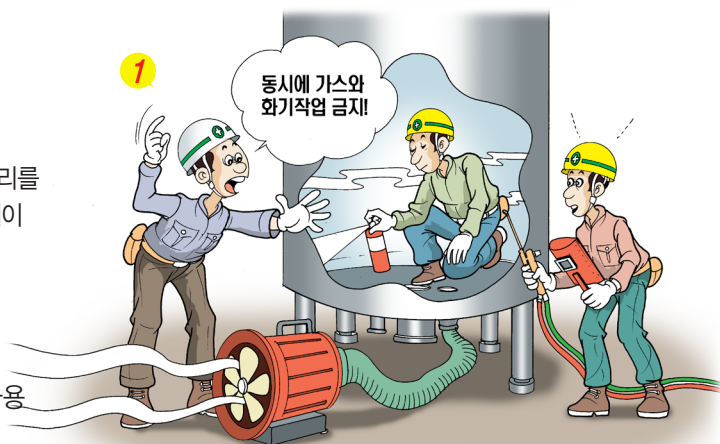


중류수 저장탱크 보수작업 중 인화성가스가 충전된 침투탐상검사용 액제(가스통)를 뿌리며 탱크 내부 청소작업을 하고, 동시에 탱크 하부에서 용접작업 중 개방된 배출배관을 통해 누출된 가스에 용접불꽃이 착화되어 탱크내부로 급속히 확산된 화염에 화상(1명 사망, 1명 부상)



! 재해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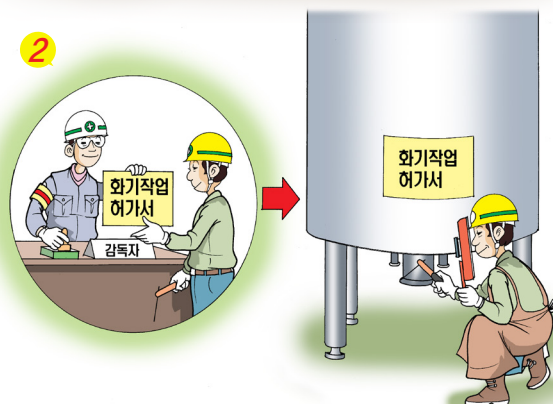
-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 화기의 사용
 - 중류수 저장탱크의 개방된 배출구를 중심으로 10cm 이내의 거리를 두고 내부에서는 인화성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한 스프레이 청소작업과 외부에서는 드레인 배관 용접작업을 동시에 실시
- 통풍·환기 등의 조치 미흡
 - 하부의 배출구 및 상부의 맨홀을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의 탱크내부에서 인화성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



+ 안전작업 방법

TIP

- 1 화재·폭발 등의 예방조치 철저
 - 인화성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의 조치 실시
- 2 화기 및 인화성 물질 취급시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작업
 - 인화성가스 취급작업과 점화원이 되는 화기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지 말고,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용접작업 실시
 - 화기작업허가 및 현장확인 등 안전작업절차에 의한 안전작업 실시





저장탱크 용접작업 중 화재에 의한 화상

화기작업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세요!

탱크내부에서
인화성가스로 세척작업,
근거리에서 용접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다 화재
화염에 의해 1명 사망,
1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입니다.



인화성물질이
취급되는 장소에서는
화기사용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화기작업허가 등
안전작업절차를
정하여 작업하도록
하세요.



참고법령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제244조(방화조치)

